■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7호서식] <개정 2026. 1. 8.>

# [ ] 엽총·공기총·석궁 소지허가
# [ ] 화약류 제조보안(관리보안) 책임자 교육 수강신청서

| 접수번호 | 접수일자 | 처리기간 즉시(3근무시간 이내) |
|---|---|---|

| | | |
|---|---|---|
| 신청인 | 성 명 | 생년월일 |
| | 주 소 (전화번호 : ) | |
| | 직 업 | |
| 신청 내용 | 교육지망연월일 | |
| | 교육지망장소 | |

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**경찰서장, 시·도경찰청장** 귀하

| | | |
|---|---|---|
| 신청인 제출서류 | 사후 교육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엽총·공기총·석궁 소지허가에 대한 사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만 해당합니다) | 수수료 20,000원 |
|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| 화약류제조기사·화약류제조산업기사 자격증 또는 화약류관리기술사·화약류관리기사·화약류관리산업기사·화약취급기능사 자격증(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만 해당합니다) | |

##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